

표절과 올바른 인용 방법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가정의학교실

김 수 영[†]

표절은 “타인의 아이디어, 과정(방법), 결과물, 문장 등을 적절한 인용이나 승인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표절은 연구의 계획, 수행, 논문 작성, 출판의 모든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표절의 대상은 크게 아이디어와 본문으로 나눌 수 있다. 표절은 비교적 사안이 경미하여 윤리적인 문제로만 취급되는 경우도 있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연구 부정으로 간주되어서 처벌을 받기도 한다. 예를 들어 타인의 아이디어나 다른 사람의 자료를 인용 없이 도용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연구 부정행위(research misconduct)라고 할 수 있지만 잘못된 인용, 참고문헌 오류, 참고문헌 누락 등은 범죄 행위로 분류할 정도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표절이 의심되면 해당 사례(allegation)가 표절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하고 표절의 심각성 정도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판단하여야 한다. 표절에 대한 고발은 매우 심각한 것이고 만일 그러한 고발이 거짓으로 들어거나 표절에 대한 가정이 잘못되었으면 이에 대한 반향이 무척 크기 때문에 판정에는 신중을 기울여야 한다. 대부분 상식적인 판단이 가장 중요한 잣대가 되지만 논란이 되는 경우 법정에서 표절 여부가 가려지기도 한다.

중심 단어: 표절, 연구부정행위, 참고문헌, 인용

서 론

연구 윤리와 관련된 몇 가지 과문이 우리나라 학술계를 강타한 후 우리 학계에 대한 많은 비판이 쏟아졌다. 이들 과문으로 논문 표절, 건수 부풀리기, 부적절한 저자 등에 관대했던 우리나라 연구 윤리의 관행이 도마 위에 올랐으며 시급히 연구 윤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교훈을 남겼다. 이들 과문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한 것이 표절에 대한 것이다. 표절은 음악이나 미술 영역에서 자주 문제가 제기되어 매우 익숙한 용어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우리나라 학술계에서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한 지는 비교적 최근이라고 할 수 있다. 외국의 경우 표절을 연구 부정으로 간주하여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학생 때부터 표절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표절이 문제가 되는 것은 과학적 연구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정직성을 해치고 있기 때문이다. 대체로 과학적 연구는 객관성, 정확성, 효율성, 정직성 등이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중 정직성은 출판 윤리의 핵심

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표절 정의나 판정은 쉽지 않은데 그 이유는 표절이 아주 경미한 인용상의 실수에서부터 다른 사람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법적인 문제까지 매우 포괄적인 영역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현재 많은 기준들이 세계화되면서 과거의 기준과는 다른 엄격성이 요청되고 있고 이는 많은 갈등 요소를 안고 있다. 그런 이유로 표절과 관련해서도 많은 논란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 의학 논문 윤리의 한 중요한 부분인 표절에 대해 용어, 정의, 범위, 표절과 관련된 윤리적 문제, 발견과 판정, 사후 처리 그리고 예방 등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한다.

용 어

표절을 의미하는 plagiarism의 어원은 ‘어린이 유괴’의 라틴어인 ‘plagiarius’에서 나왔다는 주장이 일반적이지만 그러한 견해가 잘못된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¹⁾

표절은 “타인의 아이디어, 과정(방법), 결과물, 문장 등을 적절한 인용이나 승인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²⁾ 표절은 연구의 계획, 수행, 논문 작성, 출판의 모든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표절의 대상은 크게 아이디어와 본문으로 나눌 수 있다.

표절은 비교적 사안이 경미하여 윤리적인 문제로만

[†]교신저자: 김수영

Tel: 02-2224-2406, Fax: 02-2224-2409

E-mail: pclove@hallym.or.kr

취급되는 경우도 있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연구 부정으로 간주되어서 처벌을 받기도 한다. 예를 들어 타인의 아이디어나 다른 사람의 자료를 인용 없이 도용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연구 부정(research misconduct)이라고 할 수 있지만 잘못된 인용, 참고문헌 오류, 참고문헌 누락 등은 범죄 행위로 분류할 정도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이 작성한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여 사용하는 것을 verbatim이라고 한다. 이 경우는 인용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따옴표를 사용하도록 권고한다.

다른 사람이 작성한 문서의 일부를 사용하면서 뜻이 변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몇몇 단어를 바꾸거나 글의 순서를 바꾸어서 표현하는 경우를 바꿔 쓰기(paraphrasing)라고 한다. 바꿔 쓰기를 하더라도 참고한 문헌에 대한 인용 표시를 하여야 하며 원래 문장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원래의 문장을 약간의 표면적 변화만을 주고 그대로 차용하여 사용하면 적절한 인용을 하여도 표절로 간주될 수 있다. 따라서 원래 문서에 있는 내용을 차용하여 사용할 때 바꿔 쓰기를 하려면 원래 문장의 내용의 아이디어와 용어를 완전히 이해하여야 한다.

다른 사람이 작성한 문서의 일부를 사용하면서 그 내용을 줄여서 표현하는 것을 요약(summarizing)이라고 한다. 요약도 바꿔 쓰기와 거의 유사한 원칙이 적용되어 적절한 인용표시를 하여야 하며 원래 내용의 아이디어와 용어를 완전히 이해한 후 자신만의 언어로 표현하여야 한다.

아이디어의 표절은 타인의 개념, 결론, 설명, 가설 등을 인용이나 승인 없이 도용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강의를 듣거나 해당 분야의 전문가와 개인적인 교신을 통해 아이디어를 얻는 경우 이를 밝히는 것이 윤리적이다. 밝히는 방법은 각주가 될 수도 있고 인용이 될 수도 있고 내용 중에 표시할 수도 있지만 어떤 형태이든 해당 아이디어의 출처에 대해서는 밝히는 것이 현명하다. 이 경우는 윤리적인 문제만을 일으키고 대부분 의도하지 않은(unintentional)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아이디어 표절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연구 계획서를 심사할 때나 논문을 심사할 때 다른 사람의 중요한 아이디어나 연구 방법을 사용하면서 이를 인용하지 않고, 자신이 저자인 것처럼 논문을 출판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는 행위 자체가 의도적이고 중대하기 때문에 중요한 연구 부정으로 간주한다.

정의, 범위

Committee on Publication Ethics (COPE)는 표절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³⁾

“다른 사람의 출판된 혹은 출판되지 않은 아이디어(연구 제안서 포함)를 인용 없이 사용하거나 새로운 저자로 논문을 출판하는 것을 말한다. 표절은 연구의 계획, 연구 수행, 논문 쓰기, 출판의 모든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다. 인쇄본, 전자 출판 모두에 해당되며 다른 언어로 표현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의학잡지 편집인 국제 협의체(International Committee of Medical Journal Editors, ICMJE)에서 제정한 생의학 잡지에 투고하는 원고의 통일 양식⁴⁾에서는 표절에 대한 명백한 내용이 없지만 관련 내용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학술적인 내용을 다루는 주요 정기간행물(primary source periodicals)을 구독하는 독자는 그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이 모두 처음으로 출판되는 원저라고 간주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입장은 국제 저작권법(international copyright law), 윤리적 진실성(ethical conduct), 정보 자원의 효율성(cost-effective use of resources) 등에 입각한 것이다”

미국의 정부 기관인 연구 진실성 위원회(Office of Research Integrity, ORI)는 표절을 “타인의 지적 자산을 도용 또는 착복(misappropriation)하는 것 혹은 다른 사람이 작성한 문서의 본문을 복제하면서 인용하지 않은 것으로 정의한다.”⁵⁾ “지적 자산의 도용, 착복”이란 “연구비 심사나 논문 심사를 통해 알게 된 아이디어나 특정 방법론을 원저자의 허가 없이(unauthorized)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다른 사람이 작성한 문서의 본문을 복제하면서 인용하지 않은 것”은 “문장이나 문단을 그대로 혹은 거의 그대로 사용하면서 인용하지 않아 해당 사항에 대한 원저자로 오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성 요한 대학교의 Roig는 ORI 프로젝트로 진행된 표절 관련 교육 프로그램 문서에서 표절과 관련된 여러 가지 윤리적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1) 문서의 일정 부분을 그대로 쓰거나(verbatim), 일부 단어를 바꾸어서 사용하거나(paraphrasing), 일부 내용을 요약해서 사용할 때(summarizing)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사용할 때는 다른 사람의 기여를 완전히 밝히도록 하고, 2) 문서의 일정 부분을 그대로 쓸 때는 해당 부분은 따옴표로 표시하도록 하고, 3) 문서의 일정 부분을 paraphrasing할 경우는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여 자신의 언어로 표현하도록 하며, 4) 기술하는 사실이나 아이디어가 주지하는 사실(common knowledge)인지 불확실할 경우에는 인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⁶⁾

다른 사람이 연구한 내용을 자신의 이름으로 논문을 출판하면서 연구 기여자의 이름을 저자로 포함하지 않는 경우 등과 같은 저자 분쟁(authorship disputes)의 경우 ORI는 표절의 영역에서 제외하지만 국립과학 재단(National Science Foundation) 같은 단체는 표절 영역에 포함시킨다.⁷⁾ 중복게재(이중게재)의 경우 일종의 자기 표절로 보아 표절의 범주에 포함시키기도 하지만 대부분 단체에서는 이중게재와 표절은 분리하여 취급한다.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이 주지의 사실(common knowledge)인 경우는 인용을 하지 않아도 표절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주지의 사실’인지의 여부는 예상되는 독자의 범위, 저자의 전문성 등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현재 쓰고자 하는 내용이 주지의 사실인지 불확실할 경우에는 인용 처리할 것을 권장한다. 콜로라도 대학의 방사선과 의사는 Armstrong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예를 제시하였다.⁷⁾

“(1) 폐의 일차적인 기능은 흡입 가스와 정맥혈 간의 가스 교환이다. (2) 동맥 저산소증의 주요 원인은 환기와 관류의 불균형이다. (3) 정상 성인의 폐에는 평균 300×10^6 개의 폐포가 있다”

이 경우 (1)은 주지의 사실이므로 인용할 필요없고 (3)은 반드시 인용하여야 하며 (2)의 경우 예상되는 독자의 범위, 저자의 전문성 등에 따라서 인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⁷⁾

하지만 이에 대해 반대의견도 있다. 대부분의 잡지와 교과서는 지면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인용 가능한 것을 인용하는 것이 힘들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인용하는 것이 표절에 대한 두려움에서 출발해서는 안 된다”⁸⁾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의 핵심이다. ICMJE의 통일 양식에도 이에 대한 구절이 있다.⁹⁾

“해당 주제에 대하여 너무 상세하게 많은 문헌을 열거하면 인쇄본의 공간을 과다하게 차지하게 된다. 그러므로 많은 문헌을 나열하기보다 핵심이 되는 중요한 원전 문헌 몇 개를 열거하는 것이 좋다.”

표절은 한 언어로서 다른 언어로 표현할 때도 그대로 적용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영어로 표현된 문서를 우리말로 번역할 경우에도 위에서 언급한 표절의 원칙은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연구자가 영어로 된 논문을 작성할 경우 자신이 쓰고자 하는 내용을 표현하기 위해 다른 논문에서 일부 내용을 차용하는 경우도 표절의 원칙은 그대로 적용된다. 하지만 연구에 대한 지원이 매우 제한되어 있는 제3세계의 연구자들을 위해 이러한 원칙을 “*faux pas*” (불어로 잘못된 방향이란 뜻으로 문화적인 이유로 잘못된 것으로 처리되는 것을 말함)로 조

금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⁹⁾

매우 전문적인 내용 특히 매우 제한된 분야의 연구 방법론을 인용하면서 표절을 피하기 위해 일부 단어를 바꾸어 내용을 그대로 살리기는 매우 힘들다. 따라서 이전에 출판된 연구의 방법론 기술에 이용된 문장을 인용할 때는 표절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에 대해 ORI는 다음과 같은 정책을 취한다.⁶⁾

“ORI는 일반적으로 흔히 사용되는 방법론이나 과거 연구에서 기술된 연구 방법을 기술하는 동일한 혹은 거의 동일한 문구를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표절을 적용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ORI는 그렇게 하여도 독자들이 잘못 이해할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원칙이 윤리적인 저술 활동에 전적으로 부합되지는 않는다는 비판도 있다. 즉 표절을 줄이기 위한 원칙을 그대로 따라야 하며, 그대로 따올 경우에는 따옴표를 붙이고 일정 부분을 paraphrasing할 경우는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여 자신의 언어로 표현하도록 권장하기도 한다.⁷⁾

표절과 저작권법

논문이 출판사에 투고되면 해당 논문의 저작권은 출판사로 이양되며 출판사는 논문이나 저작물을 출판, 재판 발행, 판매, 배포, 가공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만일 저작권이 있는 지적 재산을 사용할 때는 저작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사용이 연구나 교육 등의 “fair use”(정당한 사용)인 경우는 저작권법의 저촉을 받지 않는다. 논문을 쓰면서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인용하는 경우는 정당한 사용으로 간주되며 따라서 승인을 받지 않아도 저작권을 위반했다고 간주하지 않는다.

반면 저작물의 표절이나 자기-표절은 일부 저작권법을 위해한 것이다. 이때 저작권에 대한 해석은 출판된 것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출판되지 않은 원고, 예를 들어 연구 제안서 등도 저작권이 발효된 것으로 간주한다.⁷⁾

적절한 인용과 따옴표 등의 사용으로 표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너무 많은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는 저작권법을 위반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300~500 단어까지는 승인 없이 인용할 수 있지만 500단어가 넘어가면 이에 대한 승인이 필요하다.¹⁰⁾

발견, 판정, 사후관리

1. 발견

해당 학계에 내재하는 여러 가지 감시 시스템이 표절

을 발견하는 데 가장 커다란 역할을 한다. 논문을 읽는 독자나 논문의 투고를 받는 편집인, 논문을 심사하는 편집인 모두 표절이 의심되는 논문 발견에 일정 정도 역할을 할 수 있다.

일부 소프트웨어는 전자 데이터베이스 내의 동일한 어휘를 발견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에 따라서 문자가 30개 이상, 7~10개 단어, 48개 단어가 인용 부호 없이 동일할 경우를 보여준다. 이들 소프트웨어는 따옴표 없이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verbatim)만을 골라내는 제한성이 있다. Google을 검색하는 것이 표절 여부를 선별하는 데 매우 유용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¹¹⁾

체계적 고찰 과정은 표절을 선별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 체계적 고찰은 고찰하고자 하는 분야의 모든 논문을 검토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표절이나 이중 게재 등의 문제가 발견되는 경우가 비교적 흔하다.¹²⁾ Charmers는 체계적 고찰 과정에서 표절이 의심되는 논문을 발견하고 해당 저자의 많은 저작물을 검토하여 추가적인 표절 내용을 알아낸 뒤 이를 수정하기 위한 여러 가지 파란만장한 과정을 BMJ에 발표하였다.¹³⁾

2. 판정

표절이 의심되면 해당 사례(allegation)가 표절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하고 표절의 심각성 정도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판단하여야 한다. 표절에 대한 고발은 매우 심각한 것이고 만일 그러한 고발이 거짓으로 들어오거나 표절에 대한 가정이 잘못되었으면 이에 대한 반향이 무척 크기 때문에 판정에는 신중을 기울여야 한다. 대부분 상식적인 판단이 가장 중요한 잣대가 되지만 논란이 되는 경우 법정에서 표절 여부가 가려지기도 한다.⁸⁾

대체로 표절 여부의 판정 주체는 연구자가 속한 기관이며 해당 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연구 윤리 관련 기구에서 시행을 한다.

표절의 심각도 혹은 정도(extent)를 다룰 때는 연구 부정을 다루는 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연구 부정은 해당 연구자 사회에서 받아들이는 정직하고 책임성 있는 연구 행위에서 심각하게 벗어나는 것으로, 의도적으로 시행되었거나(intentionally), 알면서 고의적으로 행하였거나(knowingly), 부정행위 여부에 개의치 않고(recklessly) 이루어졌을 때를 말한다.¹⁴⁾ 표절의 심각도에 대한 기준도 있는데 1) 표절의 정도는 어떠한가, 2) 악의적인가?, 3) 과거에도 표절을 한 적이 있는가, 4) 저자의 위치는 어떠한고 어떠한 훈련을 받았는가, 5) 표절을 한 저작물도 original한가?와 같은 5가지 기준이 제안되기도 하였다.¹⁴⁾

미국의 경우 표절 등의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처리과정은 아래와 같다.¹⁵⁾

“일련의 조사과정은 선의의 제보자(의혹이 제기된 연구자가 소속된)가 연구기관, 또는 연구진실성관리국에 의혹이 제기된 연구자의 연구진실성위반 가능성을 제보함으로써 시작되며, 그에 대해 연구진실성관리국이 연구기관에 통보, 연구기관은 자체 조사위원회를 가동하게 된다. 조사위원회의 결과는 연구진실성관리국에 통보되어 도출된 결과의 합리성에 대해 감독 및 평가가 이루어지며, 결론에 도달하였을 때 의혹이 제기된 연구자에게 최종 변론을 위한 항소의 권한이 주어진다.”

3. 사후관리, 예방

Charmer가 BMJ에 고발한 표절에 관련된 사항은 결국 해결되지 못하였다. Charmer는 연구자가 속한 표절 논문을 출판한 잡지의 편집인, 세계보건기구(연구자가 중요한 프로젝트를 수행 중), 연구자가 속한 대학에 해당 사항을 통보하였지만 해당 기구는 만족할만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연구자는 그 후에도 왕성하게 연구 논문을 발표하고 있다. 결국 Charmer는 여러 연구 기관이나 잡지사는 표절에 대해 보다 강력한 정책을 가져야 하며 표절 발견을 위해 체계적 고찰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¹³⁾

앞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표절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후 조치보다는 예방이 더 중요하다. 상당수 기관에서 연구 윤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미흡한 것이 사실이며, 현재 연구를 진행하는 연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경우가 매우 적은 것이 문제이다.¹⁵⁾

올바른 인용과 참고문헌 관련 윤리적 문제

1. 일반적 원칙

인용은 문헌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의 출처를 확실히 해주며 인용에 쓰인 참고문헌은 문헌의 가장 후반부에 나열되어 있다. 참고문헌은 독자로 하여금 저자가 기술한 내용을 더 자세히 볼 수 있는 기회와 근거를 찾아볼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정확도가 생명이다. 따라서 원고에 포함된 인용 내용과 참고문헌은 명백히 일치하여야 하며 참고문헌에는 인용한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저자 이름, 잡지 이름, 권호 등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러한 원칙에 어긋나는 경우 여러 가지 윤리적인 문제를 야기한다. 그런 문제에는 윤리적으로 의문시되는 경우도 있고 부적절하다고 간주되는 경우도 있다. 해당 사항에 대해 앞에서 언급한 Roig의 문헌을 기초로 정리

하였다.⁶⁾

2. 윤리적으로 의문시 되는 경우

1) 부주의하게 인용한 원천을 밝히는 것: 학술적 혹은 과학적인 논문을 작성함에 있어서 참고문헌은 독자로서 하여금 현재의 근거나 깊이 있는 내용에 대해서 탐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서비스이다. 그런 이유로 저자는 논문에 참고문헌을 나열할 때는 최대한 정확성을 기해야 한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논문의 저자들이 항상 참고문헌 나열이나 논문 인용을 적절한 수준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몇몇 연구들에 의하면 논문의 참고문헌에서 오류는 쉽게 발견할 수 있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한다.

2) 처음 발견한 사람을 인용하지 않는 것: 또 다른 관심사 중의 하나는 처음 현상을 발견하고 연구한 사람을 적절히 인용하지 않는 경우이다. 상당수의 경우 최초의 발견자를 인용하기보다는 그 후에 이루어진 논문을 인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지만 원칙은 처음 해당 사항을 발견한 사람과 논문을 인용하는 것이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최초 발견자에게 정당한 대우를 해주지 않는 것이라 볼 수 있다.

3. 참고문헌에 대한 부적절한 조작

일부 연구자들은 문헌을 검토할 때 공정하지 않은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경향이 있다. 가장 주요한 문제는 자신의 데이터나 이론에 적합한 문헌만을 인용하고 그렇지 않은 문헌들은 과감히 제외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책임 있는 연구를 하는 연구자라면 해당되는 모든 문헌을 인용하며 설사 자신의 이론이나 데이터에 반하는 문헌이라도 인용하여야 한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진실의 추구라는 연구자의 일차적인 목표에 반하게 되는 것이다.

1) Citation stuffing: 참고문헌에 대한 부적절한 조작으로 흔히 일어나는 것은 적절성에 관계없이 자신의 논문이나 자신과 관련성이 있는 잡지의 논문을 주로 인용하는 경우이다. 이런 경우를 특히 citation stuffing이라고 한다. 이 경우 중요한 목적은 자신의 논문의 인용 지수(impact factor)를 높이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과학의 객관성에 위배되는 행동일 수 있다.

인용 지수는 각 논문들이 얼마나 인용되었는지를 측정하여 각 학술지의 중요도와 명성을 확인하는 데 쓰인다. 하지만 개별 논문의 경우도 다른 사람이 얼마나 인용했는지를 따져서 각 개인의 이력이나 명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그런 이유로 일부 연구자들은 자신

의 논문을 적절성에 관계없이 논문에 끼워 넣음으로써 이러한 인용 지수를 높이려고 시도하게 된다.

비슷한 경우로 해당 논문의 심사를 담당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연구자의 논문을 인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자신의 논문을 인용한 논문에 대해 좀 더 호감을 가지게 될 것으로 기대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일부 학술지의 편집장들은 때때로 자신의 잡지의 인용 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현재 학술지의 논문을 더 많이 인용하도록 요청하기 한다(manipulating a journal's impact factor). 저자들은 이러한 요청에 대해 저항하여야 한다.

2) 초록이나 예비 논문을 인용하는 것: 논문을 쓸 때 해당 주제에 대한 검색에서 자신의 논지를 펴는 데 중요한 논문이지만 원문을 구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가? 검색에서 볼 수 있는 초록만으로 내용을 파악하고 이를 참고문헌에 인용하여야 할가? 만일 인용한다면 초록을 참조하였음을 밝혀야 할가?

초록만을 보고 인용하는 경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초록은 논문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게다가 초록은 매우 축약된 형태이므로 연구의 방법론이나 결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제공하지 않는다. 일부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저자 이외의 사람이 논문의 초록을 만들어 내는 경우도 있다. Uniform requirements에서는 초록을 참고문헌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권장한다.⁹⁾

비슷한 경우로 출판된 형태의 논문을 인용하기는 했지만 학술대회 발표용 초고이거나 학술대회 초록집에 수록되어 있는 예비 논문인 경우가 있다. 이렇게 인용하게 되면 학술 논문 작성의 필수적인 요소인 정직성과 정확성을 해치게 된다. 가장 큰 이유는 초고나 예비논문의 경우 실제 논문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심사 과정이나 학술대회 도중 지적을 받은 이후 내용이 바뀔 수도 있고 출판된 이후에도 잘못된 부분이 수정된 오류 수정판이 나오기도 한다.

3) 읽지 않은 논문이나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논문을 인용하는 것: 다른 논문에 인용되어 있는 참고문헌을 실제 논문을 보지 않고 인용하는 것(이차 인용: secondary citation)은 올바르지 않으며 사안에 따라 표절에 해당될 수도 있다. 이는 인용한 다른 논문이 부정확할 수 있고 독자에게 잘못된 판단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 만일 다른 사람이 인용한 논문을 확인하기 힘든 경우는 그런 사실을 밝히면 된다.⁷⁾

4) Blanket reference: “Blanket reference”는 하나의 사실에 대해서 여러 논문을 동시에 인용하는 것이다. Blanket reference의 예는 “최근 몇 년간 의학문헌에서 표절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¹⁻⁵⁾”와 같은 것

이다.⁸⁾ Blanket reference에 속한 모든 참고문헌의 내용이 적절히 요약된 것이라면 문제는 없지만 개발 저작물의 기여 정도를 명시하지 않을 수 있고 인용 오류가 은폐될 수 있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¹⁶⁾

결 론

일반적으로 과학 연구에는 정직성, 정확성, 효율성, 객관성 등의 덕목이 요청된다. 이 중 정확성, 효율성, 객관성 등은 대부분 의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반면 정직성을 위반하는 행위는 대부분 의도적으로 이루어지며 가장 심각한 윤리적 문제를 일으킨다. 표절이 윤리적 문제를 일으키는 이유는 남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부분을 자신의 창작물로 위장함으로써 연구의 주요 덕목인 정직성(integrity)을 훼손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표절 문제는 작년 몇몇 연구 윤리관련 파문에서 크게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다. 하지만 그 경우 해당 연구자의 지위의 박탈로 모든 사안은 종결되었으며 해당 논문의 표절 여부는 명백히 판정이 나지 않았고 지위 박탈 이후 어떠한 처리가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려져 있지 않다.

서양의 경우도 표절이 아주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는 연구 윤리의 문제였지만 이러한 행위가 문제가 되어 체계적 대책을 세운 것은 불과 20년 정도이다. 체계적인 대책이란 연구 윤리 기준의 마련, 연구 부정에 대한 정의, 처리 절차 마련,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 전담기구의 마련 등이다.

향후 출판 윤리의 문제와 연구 부정의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을 때 이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이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1. Skandalakis JE, Mirilas P. Plagiarism. Arch Surg 2004;139:1022-4.
2. Office of Research Integrity. Definition of research misconduct. Available from:URL:http://ori.dhhs.gov/misconduct/definition_misconduct.shtml.
3. Committee on Publication Ethics (COPE). Guidelines on good publication practice. Available from:URL:http://www.publicationethics.org.uk/guidelines.
4. International Committee of Medical Journal Editors. Uniform requirements for manuscripts submitted to biomedical journals. Available from:URL:http://www.icmje.org/.
5. Office of Research Integrity. Definition of plagiarism. Available from:URL:http://ori.dhhs.gov/policies/plagiarism.shtml.
6. Roig M. Avoiding plagiarism, self-plagiarism, and other questionable writing practices: a guide to ethical writing. Available from:URL:http://facpub.stjohns.edu/roigm/plagiarism/Index.html.
7. Armstrong JD 2nd. Plagiarism: what is it, whom does it offend, and how does one deal with it? AJR Am J Roentgenol 1993;161(3):479-84.
8. Haramati N, Amis ES Jr. Plagiarism: an odious accusation: worst if false [letter]. AJR Am J Roentgenol 1994;163:725-6. Cited in Skandalakis JE, Mirilas P. Plagiarism. Arch Surg 2004;139:1022-4.
9. Vessal K, Habibzadeh F. Rules of the game of scientific writing: fair play and plagiarism. Lancet 2007;369(9562):641.
10. Schrader ES. Perlis and pitfalls of plagiarism and how to avoid them. AORN J 1980;31:981-2. Cited in Armstrong JD 2nd. Plagiarism: what is it, whom does it offend, and how does one deal with it? AJR Am J Roentgenol 1993;161(3):479-84.
11. Weeks AD. Detecting plagiarism: google could be the way forward. BMJ 2006;333(7570):706.
12. Tramèr MR, Reynolds DJ, Moore RA, McQuay HJ. Impact of covert duplicate publication on meta-analysis: a case study. BMJ 1997;315(7109):635-40.
13. Chalmers I. Role of systematic reviews in detecting plagiarism: case of Asim Kurjak. BMJ 2006;333(7568):594-6.
14. Benos DJ, Fabres J, Farmer J, Gutierrez JP, Hennessy K, Kosek D, et al. Ethics and scientific publication. Adv Physiol Educ 2005;29(2):59-74.
15. 이준석, 김옥주.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규제 및 법정책 연구: 미 연구진실성관리국(ORI)의 사례를 중심으로. 생명윤리 2006;7(1):101-16.
16. Foster RL. Avoiding unintentional plagiarism. J Spec Pediatr Nurs 2007;12(1):1-2.

임상 퀴즈

표절과 올바른 인용 방법

다음 임상 퀴즈에 응답해서 60% 이상 득점하시는 회원에게는 대한가정의학회 학술회원 평점 4점을 드립니다. 임상 퀴즈에 답하셔서 응답지를 대한가정의학회 사무처로 보내주시시오. 정답은 다음 호에 게재됩니다(팩스: 3210-1538, E-mail: kafm@kafm.or.kr).

1. 표절의 정의로 가장 합당한 것은?
 - 가) 존재하지 않는 연구 자료나 결과를 허위로 만들어내는 행위
 - 나) 타인의 연구내용 및 결과, 아이디어를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
 - 다) 연구재료, 장비,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또는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및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 라) 동일한 원고를 한 잡지에서 게재 여부가 결정되기 전에 다른 잡지에 투고하는 것
 - 마) 논문을 여러 개로 나누어 출판하는 것
2. 다음 중 명백한 주지의 사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 가) 폐의 일차적인 기능은 흡입 가스와 정맥혈 간의 가스 교환이다.
 - 나) 동맥 저산소증의 주요 원인은 환기와 관류의 불균형이다.
 - 다) 정상 성인의 폐에는 평균 300×10^6 개의 폐포가 있다.
 - 라)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폐암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높다.
 - 마) 폐포는 하루에 100개씩 없어지고 새로 생겨난다.
3. 다음과 같은 인용행태를 무엇이라고 할까?

참고문헌에 대한 부적절한 조작으로 흔히 일어나는 것은 적절성에 관계없이 자신의 논문이나 자신과 관련성이 있는 잡지의 논문을 주로 인용하는 경우이다.

- 가) Blanket reference
- 나) Citation stuffing
- 다) Manipulating a journal's impact factor
- 라) Secondary citation

제 29 권 제 2 호 임상퀴즈의 정답은 219쪽에 있습니다.

..... 절 취 선

제29권 3호 응답지 (표절과 올바른 인용 방법)

의사면허번호		전문의 번호			소속 지회	
성 명		연락처(전화)			연락처(E-mail)	
퀴즈 번호	1.	가)	나)	다)	라)	마)
	2.	가)	나)	다)	라)	마)
	3.	가)	나)	다)	라)	